

3. 의견제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7층 권익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전화 02-2100-6422, 팩스 02-2100-64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298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3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주식회사 고려이엔시 ② (주)목양종합건축사사무소
③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나. 전화번호 : ① 061-371-0131 ② 070-7733-0700 ③ 031-910-0804

2. 명칭 : 미세조절 프리스트레스 및 하이브리드 섬유적용 고강도 RC기둥의 단면 최소화 내화공법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철근콘크리트 / 철근콘크리트 골조

<기술의 요지>

본 기술은 와이어로프 나선배근을 통한 횡보강 및 하이브리드 섬유 혼입을 통한 내화보강을 적용하여 고강도 콘크리트 기둥의 단면크기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공기단축 및 폐기물 절감이 가능한 공법이다. 신청기술은 기존의 와이어로프 나선배근 방식으로 신축 시 주근이 전도되는 문제점과 신축 또는 보수보강 시 프리스트레스의 균일적용 및 미세조절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보완하였고, 폭발 제어를 위한 강섬유와 폴리프로필렌섬유를 혼합한 하이브리드 섬유 혼입 시 고층 건축물 적용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콘크리트 펌프압송성을 해결하였다. 이처럼 강화된 횡보강으로 인해 하중지지력이 향상되어 단면감소가 가능하며, 폭발을 효과적으로 제어함으로써 추가적인 내화피복을 제거하여 단면 최소화가 가능한 내화공법임.

<범위>

프리스트레스의 균일적용 및 미세조절이 가능한 와이어로프 나선배근으로 하중지지력이 향상되어 단면감소가 가능하며, 하이브리드 섬유 혼입 시에도 펌프압송성을 확보하면서 폭렬제어가 가능한 최적배합을 적용하여 추가적인 내화피복을 제거함으로써 고강도 콘크리트 기둥의 단면최소화 내화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20-299호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교통의 안정성, 이용 편리성 확보 등을 위하여 운항시각을 배분 또는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항공교통이용자가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로 장시간 머무르게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항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6642호, 2019.11.26. 공포, 2020.5.27. 시행)됨에 따라, 운항시각의 배분업무를 공항운영자에게 위탁하고, 이동지역 내 기내 지연 상황의 해결을 위해 관계 기관과의 협조내용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19.12.19)의 후속대책으로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보험가입을 사업자 단위로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완화하고자 함

또한,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신고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동지역 내 기내대기 시 관계 기관 협조 요청(제25조)

이동지역 내에서 장시간 기내대기가 발생하는 경우 조속한 해결을 위해 공항운영자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상황접수·전파, 관제지원 또는 외부음식 반입 관련 허가절차 우선 처리 등 협조를 요청하고, 협조요청은 문서,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도록 함